

춘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31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3120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320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장민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겸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6.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320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와 2021. 4. 2. 접수 제16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중 제1 토지에 관하여 2016. 5. 9. 피고 앞으로 2012.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20. 12. 17. 원고 앞으로 2020.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21. 4. 2. 다시 피고 앞으로 2021.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2 토지에 관하여 2012. 4. 20. 피고 앞으로 2012. 3.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2020. 12. 17. 원고 앞으로 2020.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21. 4. 2. 다시 피고 앞으로 2021.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3 토지에 관하여 2017. 2. 27. 춘천시 앞으로 2017. 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2021. 3. 9. 원고 앞으로 2021.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21. 4. 2. 피고 앞으로 2021.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최종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등기는 피고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막연하게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21. 4. 1.경에는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인 상태였고, 서로 이혼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 이혼조정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2021. 3. 21.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F 명의변경 서류는 금요일 법무사에 접수했고, 이혼조정신청 서류는 내일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피고가 말하는 F 명의변경 서류는 이 사건 각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이혼조정 신청대리인인 법무법인 G의 H 변호사는 2021. 3. 24. 원고에게 이혼조정신청서를 캡처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위 신청서의 송달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위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재산분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원고가 2021. 3. 23. H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원고의 모친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의 누나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의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피고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무고 및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의 주된 근거는 원고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위 불송치 결정 이후 원고가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다시 한번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보라, 판사 고병용

별지